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정책기획관 유정근

나. 제안이유

○ 경북 주도의 저출생 극복, 항공물류 산업과 각종 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저출생극복본부, 공항투자본부 및 산림자원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경제부지사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

- 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투자유치 →
과학기술, 경제산업, 해양산업, 공항투자

○ 행정기구 조정(안 제5조, 제6조의2 및 제38조의4)

- (신설) 저출생극복본부, 공항투자본부, 산림자원국
- (폐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안전기획관
- (명칭변경)
 - 메타버스과학국 → 메타AI과학국
 - 경제산업국 → 경제통상국
 - 환경산림자원국 → 기후환경국
 - 동해안전락산업국 → 에너지산업국

○ 분장사무 조정

- 기획조정실(안 제6조 및 제8조)
 - 종전 「메타버스과학국」의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 업무 이관
- 저출생극복본부(안 제6조의3, 제7조 및 제13조)
 - “저출생대응정책” 업무 신설

- 「복지건강국」의 “출산장려” 업무 이관
- 종전 「여성아동정책관」의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 및 청소년” 업무 이관
(시행규칙에 명시)
- 「지방시대정책국」의 “교육정책” 업무 이관
- 메타AI과학국(안 제8조 및 제8조의2)
 - 종전 「경제산업국」의 “소재부품산업 및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이관
- 공항투자본부(안 제6조, 제9조, 제14조 및 조례 제16조)
 - 종전 「대구경북공항공항추진본부」의 “공항공정책, 공항신도시 조성 및 항공산업” 업무 이관
 - 종전 「투자유치실」의 “국·내외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 업무 이관 (시행규칙에 명시)
 -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 업무 이관
 - 「건설도시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 이관
- 문화관광체육국(안 제10조)
 - “문화재” → “문화유산”으로 명칭변경
- 기후환경국(안 제12조 및 제14조)
 - 「건설도시국」의 “하천계획 수립·정비 및 하천재해 복구”

업무 이관

○ 산림자원국(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종전 「환경산림자원국」의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림자원 조성관리,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관리 ” 업무 이관

- “임산업 등 산림소득” 업무 신설

○ 건설도시국(안 제6조의2 및 제14조)

- 「안전행정실」의 “도청신도시 활성화” 업무 이관

○ 소방본부(안 제17조)

-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등 관리” 업무 신설
-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청렴·반부패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

○ 농업기술원(안 제21조 및 별표 1)

- 「구미화훼연구소」 →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변경

○ 환동해지역본부(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58」로 위치 변경
- 「동해안전락산업」 → 「에너지산업」으로 업무 변경

○ 산림환경연구원(안 제52조 및 조례 제66조)

- 종전 「산림자원개발원」의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 연구 개발, 산림과학박물관, 자연휴양림, 생태숲, 유아숲체험, 야생동물생태공원,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 수목원관리소, 식물유전자원 수립 및 보존” 업무 이관

○ 소방서 신설 및 기능 조정(안 별표 2)

○ 「영양소방서」 신설

- 영양소방서 위치 :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0
- 영양소방서 관할구역 지정 : 영양군 일원

○ 「안동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안동시·영양군 → 안동시 일원

○ 조례 제4773호 부칙 수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삭제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경북 주도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극복본부 신설, 공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와 민간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

항투자본부 신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후환경국 개편, 산림 분야의 고부가가치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자원국 신설 등 행정기구의 신설·폐지·명칭변경과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부지사) 제3항제1호에서는 공항투자본부 신설에 따라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을 “투자유치”에서 “공항투자”로 변경함.
-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당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저출생극복본부, 공항투자본부, 산림자원국을 신설하고, 대구경북 공항추진본부를 폐지하며,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을 각각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기후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함.
- 안 제6조(기획조정실) “규제개혁” 사무를 공항투자본부로 이관하는 대신, 종전 메타버스과학국의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사무를 이관받음.
- 안 제6조의2(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는 안전기획관을 폐지하고, “도청신도시 활성화” 사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함
- 안 제6조의3(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 관련 분산된 사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경북형 저출생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저출생극복본부를 신설하며, “저출생대응정책” 사무를 신설하고, 복지건강국의 “출산장려” 사무, 시행규칙에서 명시되는 여성아동정책관의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 및 청소년” 사무 및 지방시대정책국의 “교육정책” 사무를 이관받음

- 안 제7조(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과 관련된 초·중·고의 “교육정책” 사무를 저출생극복본부로 이관함
- 안 제8조(메타AI과학국) 메타버스, AI 등 첨단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과학국을 메타AI과학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 경제산업국의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산업육성” 사무를 이관받는 대신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함
- 안 제8조의2(경제통상국)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산업육성”의 산업 관련 사무를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국으로 명칭 변경함
- 안 제9조(공항투자본부) 공항산업의 추진동력 확보와 민간투자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공항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종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의 “공항정책, 공항신도시 및 항공산업” 사무,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 사무, 건설도시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무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는 투자유치실의 “국내·외 투자유치·지원” 사무를 공항투자본부로 이관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안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예정(시행 '24. 5. 17.)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

- 안 제12조(기후환경국)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산림자원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하천계획 수립·정비 및 하천 재해 복구” 사무를 이관받아 수량·수질의 물관리를 일원화함.
- 안 제12조의2(산림자원국) “돈 되는 산” 조성을 위해 산림자원국을 신설하고, “임산업 등 산림소득” 사무를 신설하며, 종전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산림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관리”,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관리” 사무를 이관받음.
- 안 제13조(복지건강국) 저출생 극복 대책 일원화를 위해 “모자보건 사업 및 출산장려” 사무를 저출생극복본부로 이관함
- 안 제14조(건설도시국)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성이 높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무를 공항투자본부로 이관하는 대신 안전행정실의 “도청 신도시 활성화” 사무를 이관받아 도청 신도시 2단계 인프라 개발 추진
- 조례 제16조(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가 공항투자본부로 통폐합되어 삭제됨
- 안 제17조(소방본부) 재난 발생시 효율적 현장 지휘와 소방기관·소방공무원의 감사업무를 전문성 있게 담당하기 위해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청렴·반부패” 사무 신설

- 조례 제17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상위법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 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 삭제
- 안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 화훼 육성의 스마트화를 위해 구미 화훼연구소를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 변경함
- 안 제38조의2(설치) 환동해지역본부의 동부청사가 '24년 상반기 이전 예정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58”로 위치 변경함
- 안 제38조의4(소관사무) 종전 동해안전락산업국을 에너지 중 심의 에너지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동해안발전정책, 에 너지산업, 원자력정책” 사무를 “에너지산업, 원자력산업 육 성”으로 변경하고 “동해안권 지역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를 “환동해발전정책, 언론홍보 및 민원업무”로 변경함
- 안 제52조(소관사무) 기능이 쇠퇴한 산림자원개발원을 산림환 경연구원으로 통폐합하고 산림자원개발원의 주요 사무인 “산 립소득원 창출과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산림과학박물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생태숲·유아숲체험원·야생동물생 태공원 조성 및 관리”, “야생조수 구조 및 치료”, “수목원관리 소 운영 및 관리”,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전” 사무를 산림환 경연구원으로 이관함
- 안 제53조(하부조직) 산림자원개발원 하부조직을 산림환경연 구원 하부조직으로 이관함에 따라 “지원”을 “지원·센터·생태 원·관리소”로 변경함

- 제8절 산림자원개발원(조례 제64조~제67조) 산림자원개발원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함.
- 별표 1(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 구미화훼연구소를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명칭 변경함
- 별표 2(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영양군 일원의 화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영양소방서를 신설하고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하며 안동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함.
- 조례 제47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및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삭제와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의 시·도 한시기구 설치시 직급 협의가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삭제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존립의 문제로 대두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대구경북통합공항의 개항과 연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림자원국 개편 등을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시의성이 인정됨.
- 다만, 일부 개편안의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먼저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행정기구 개편에는 다음과 같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저출생 극복과 관련, 경북도에서는 금년 1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난 15년간 정부 차원에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지적하며 추가 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지방정부 이행 등을 촉구한 바 있음. 이와 아울러 ‘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약 727억원의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 현안의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례, 장기간이 소요되는 성과 도출 등에서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평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여 그 결과를 행정기구 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신설되는 “저출생극복본부”의 “본부”에 걸맞은 업무량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관되는 업무가 기존 여성아동정책관실(4급) 업무 + 보건정책과의 팀 단위 업무인 ‘출산장려’ + 지방시대정책국의 교육협력과의 팀 단위 업무인 “교육정책” 업무 만으로 “본부(3급)”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대외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 공항투자본부의 신설과 관련, 현행 투자유치실 업무를 공항투자본부에 이관함으로써 공항 개항을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

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 판단됨. 다만 투자유치 업무 등이 공항 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공항투자본부에 이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행정실의 '안전기획관 폐지'와 관련, 지난 경북도의회 제 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3.11.29)에서 관련 조례 심의시 안전기획관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신뢰하여 원안 통과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폐지코자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했어야 할 행정기구 개편이 성급히 추진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향후 행정개편은 도 정책의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 사료됨. 이에 대한 집행부의 폐지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국 명칭과 관련, 도민 이해도와 통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명칭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북도 내부에서도 아직 명칭의 통일이 정착되지 않았고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정립도 부족한 상태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메타AI"의 공식적인 사용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24. 4. 15)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로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

다는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강화” 과제 발표의
예와 같이 용어의 순서도 정부와는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1항과 관련¹⁾, 최소한의 국
설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무의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업무를
이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에 건설도시국의 ‘하천업무’를 이관
하는 것은 신설조직의 외형적인 규모를 인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
과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가 있고, 건설도시국 하천과
에는 “하천재해복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관련 업무” 등
건설과 관련한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들이 연관성 있
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기후환경국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됨. 특히 재난발생 시 장비 동원 등 현장대응 능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같이 업무를 이관할 경우, 기존 산림자원국이 4개
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파악

1)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며, “과” 단위의 신설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대상은 아닐지라도 향후 도의회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 행정기구 조례」의 개정 검토대상은 실국 단위가 대상이며, 과·담당관 단위의 설치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도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조례개정안의 심사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 첫째, 저출생극복본부는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시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성실히 반영토록 할 것.
- 둘째, 공항투자본부의 각 업무단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장 및 공항과 경북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
- 셋째,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을 설치함에 있어 건설도시국과 기후환경국, 안전행정실이 모두 포함되는 재난 대응 매뉴얼 또는 관련 규칙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